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집 회 기 간	1992. 2.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2. 2.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 .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본회의의 의결로"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로 하며,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를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등을"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집 회 기 간	1992.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2.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

제5조중 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1 부.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제 2 조 제2항 "제2호 구미시의회간사" 를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과장" 으로 한다.

제 2 조 제4항을 다음과같이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구미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4 조 중 "별표"를 다음과같이 한다

"별표" 중 3을 "구미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로 하고,

"별표" 중 "3"을 "4"로 하여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 6 조 중 "간사가" 를 "사무과장이" 로 한다.

제 8 조 제1항 중 "간사" 를 "사무과장" 으로 하며, 제2항 중 "간사" 를 "사무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회서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의회서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간사와"를 "사무과장과"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간사는"를 "사무과장은"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이상	20% 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 이상	50% 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 이상	100% 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 이상	200% 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 이상	500% 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 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의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의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1부.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

구미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첨 부 :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부. 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구미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②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등을 받았을때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 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때까지 일반 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1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의 건				
집 회 기 간	1991. 2 . 17 (1일간)				
의 결 일 시	1991. 2 . 17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건 사 항

○ 의회의견

- 1991. 8. 12 경상북도 고시 제 305호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선기, 남통, 신평, 비산, 광평, 임은, 사곡, 상모, 오태, 임수, 구포동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은 지구로 빠른 시일내 원안대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함이 바람직하며
- 신평, 광평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시의 관문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 단, 광평지구는 소로 2 - 2, 소로 2 - 3, 소로 2 - 4호선을 폐지하고 기존 부락과 연결되는 도로 (소로 1류) 신설 요망.

1992 년 2 월 1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건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기 권	
---------------	-----	------	-----	--	-----	--